

(기업)법률자문계약서

1. 계약 당사자의 표시

“갑” :

“을” : 변호사 김남규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0, 203·205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2. 계약의 내용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은 (기업)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갑”이 “을”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업무의 범위)

- ① “갑”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 ② “갑”의 소송, 화해, 조정, 중재 및 쟁송사건등에 관한 자문
- ③ 기타 “갑”이 의뢰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 ④ “갑”의 직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제 3 조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을”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법률자문의 범위)

- ① “갑”의 업무와 관련된 계약서 및 각종 법적문서에 대한 “을”명의로 검토서 작성 (연 3회)
- ② “갑”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명의로 발송)의 작성(연 3회)
- ③ “갑”의 업무와 관련된 유선상담 및 “갑” 직원들의 전화법률상담(횟수 제한 없이 가능)
- ④ “갑”의 업무와 관련된 변호사 방문 상담(연 5회)(단 소송의뢰와 관련된 방문과 담당자와의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⑤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질의(횟수제한 없이 가능).

제 5 조 (자문료 및 자문시간)

-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 체결시 연간 자문료로 금 일백이십만원(₩1,200,000)(VAT별도)을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 ②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법률 자문의 경우 방문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을”의 업무시간이내에서 시간제한이 없으며, 방문상담은 1회 방문시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6 조 (소송위임 비용 및 보수)

“갑”이 “을”에게 소송위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비용과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단, 소가 2,000만원 미만인 사건을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가압류, 가처분, 지급 명령등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장작성대행비용을 적용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 7 조 (비밀준수) “을”은 본 계약상 “갑”을 위한 사무처리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업상, 재산상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이해충돌의 회피)

- ① “을”은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갑”이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그 직접 상대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거나 “갑”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어떠한 사무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의뢰하기 전에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자가 이미 동일한 사건을 “을”에게 의뢰한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의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

제 9 조 (위촉기간 및 계약해지)

- ① 본 계약에 의한 법률자문의 위촉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 ② 본 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갑”의 사정으로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분의 자문료를 반환하여준다. 3개월 이후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상의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한 후 본
계약서 정본을 각 1부씩 소지한다.

※ 기업법률자문회원이 소송의뢰를 하는 경우 착수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한다. 단,
사건 수입료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
로 한다.

2016. . .

갑 : 위임인

성명/상호 : 인 주민(법인)번호 :

주 소 :

대표번호 : 이메일 :

을 : 수임인

변호사 김 낭 규 인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0, 203 · 205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TEL:(02)533-6902/586-3365 FAX(02)533-6906

사이트 : www.seenlaw.com

담당자 : 국장 정현정